[별표 5]

상대평가 방법 (제7조 관련)

1. 상대평가 기준 및 기준별 가중치

상대평가 기준		가중치(%)
환자구성상태 및 회송체계	전문진료질병군에 속하는 입원환자의 비율	40
	경증회송률	5
의료인 수	의사 1인당 평균 1일 입원환자 수	18
	간호사 1인당 평균 1일 입원환자 수	10
	교육전담간호사 배치수준	2
교육기능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방사선종양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핵의학과, 응급의학과의 12개 과목 중 레지던트가 상근하는 과목의 수 [한시 평가 유예]	5
	의료질 평가 중 교육수련 영역 평가 결과	5
의료서비스 수준	의료서비스 수준 평가결과 산출점수	5
공공성 및 중증·응급의료	중환자실 병상확보율	2
	음압격리병실 병상확보율	2
	지역 내 소아 응급환자 분담률	2
	중증상병 해당 환자 분담률과 구성비	2
	최종치료 제공률	2
합 계		100

2. 상대평가 기준별 등급구간 및 배점

가. 환자구성상태 및 회송체계

평가항목	등급 구간 및 배점 (* 배점은 소수점 2자리까지 산출)
전문진료질병군에 속하는 입원환자의 구성비율	1) 전문진료질병군 비율이 **59%** 이상인 경우 10점 2) 전문진료질병군 비율이 38%인 경우 6점 3) 전문진료질병군 비율이 38% 초과 **59%** 미만인 경우 (전문진료질병군 비율 XX.XX×0.1905)-1.2381 * 평가 기간 : 2024년 1월 1일 ~ 2026년 6월 30일
경증회송률	1) 경증회송률이 6.0%이상인 경우 10점 2) 경증회송률이 0.5%인 경우 6점 3) 경증회송률이 0.5% 초과 6.0% 미만인 경우 (경증회송률 XX.XX×0.7273)+5.6364 * 평가 기간 : 2024년 1월 1일 ~ 2026년 6월 30일

나. 의료인 수 및 교육기능

<table>
<tr><th colspan="2">항목</th><th>등급구간 및 배점</th></tr>
<tr><td rowspan="3">의료인수</td><td>의사 1인당 평균
1일 입원환자수</td><td>
<table>
<tr><td>점수</td><td>10점</td><td>9점</td><td>8점</td><td>7점</td><td>6점</td></tr>
<tr><td>구간</td><td>4명 이하</td><td>5.5명 이하
~
4.0명 초과</td><td>7.0명 이하
~
5.5명 초과</td><td>8.5명 이하
~
7.0명 초과</td><td>10명 이하
~
8.5명 초과</td></tr>
</table>
* 평가 기간 : 2025년 9월 1일 ~ 2026년 6월 30일
</td></tr>
<tr><td>간호사 1인당
평균
1일 입원환자수</td><td>
<table>
<tr><td>점수</td><td>10점</td><td>9점</td><td>8점</td><td>7점</td><td>6점</td></tr>
<tr><td>구간</td><td>1.0명 이하</td><td>1.3명 이하
~
1.0명 초과</td><td>1.6명 이하
~
1.3명 초과</td><td>1.9명 이하
~
1.6명 초과</td><td>2.3명 이하
~
1.9명 초과</td></tr>
</table>
* 평가 기간 : 2025년 7월 1일 ~ 2026년 6월 30일
</td></tr>
<tr><td>교육전담
간호사
배치수준</td><td>
<table>
<tr><td>점수</td><td>2점</td><td>1점</td></tr>
<tr><td>구간</td><td>300병상 기준 2명 배치,
300병상을 초과하는 250병상마다
1명 추가 배치</td><td>300병상 기준 2명 배치</td></tr>
</table>
* 평가 기간 : 이 고시 시행일 ~ 2026년 6월 30일(2026년 6월 30일 기준 허가 병상수 적용)
</td></tr>
</table>

<table>
<tr><th colspan="2">항목</th><th>등급구간 및 배점</th></tr>
<tr><td rowspan="2">교육
기능</td><td>레지던트 상근
과목수</td><td>
<table>
<tr><td>점수</td><td>10점</td><td>9점</td><td>8점</td><td>7점</td><td>6점</td></tr>
<tr><td>구간</td><td>10개과
이상</td><td>9개과</td><td>8개과</td><td>7개과</td><td>6개과</td></tr>
</table>
* 2028.6.30.까지 한시 평가 유예
</td></tr>
<tr><td>교육수련
영역 평가</td><td>의료질 평가의 교육수련 영역 평가의 최근 3년 결과를 연도별로 10점 환산하여 3년 평균 결과 반영</td></tr>
</table>

다. 의료서비스 수준

제4조 및 별표2(의료서비스 수준 평가항목 및 점수 산정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점수 적용

라. 공공성 및 중증·응급의료

<table>
<tr><th>평가항목</th><th>등급 구간 및 배점
(* 배점은 소수점 2자리까지 산출)</th></tr>
<tr><td>중환자실
병상확보율</td><td>
<table>
<tr><td>점수</td><td>2점</td><td>1.5점</td><td>1점</td></tr>
<tr><td>구간</td><td>11%이상</td><td>9.5%이상~
11%미만</td><td>8%이상~
9.5%미만</td></tr>
</table>
* 평가 기준시점 : 2026년 6월 30일
</td></tr>
<tr><td>음압격리병실
병상확보율</td><td>
<table>
<tr><td>점수</td><td>2점</td><td>1.5점</td><td>1점</td></tr>
<tr><td>구간</td><td>1.5%이상</td><td>1.0%이상~
1.5%미만</td><td>0.8%이상~
1.0%미만</td></tr>
</table>
* 평가 기준시점 : 2026년 6월 30일
</td></tr>
<tr><td>지역 내 소아 응급환자
분담률</td><td>1) 지역 내 소아 응급환자 분담률* 700% 이상 10점
2) 지역 내 소아 응급환자 분담률* 50% 미만 6점
3) 지역 내 소아 응급환자 분담률* 50% 이상 700% 미만인 경우
(지역 내 소아 응급환자 분담률* XX.XX×0.0062)+5.6923
* 평가 기준시점 : 2026년 11월 30일</td></tr>
<tr><td>중증상병 해당 환자
분담률과 구성비</td><td>1. 중증상병 해당 환자 분담률(70%)
1) 중증상병 해당 환자 분담률* 240% 이상 10점
2) 중증상병 해당 환자 분담률* 50% 미만 6점
3) 중증상병 해당 환자 분담률* 50% 이상 240% 미만인 경우
(중증상병 해당 환자 분담률* XX.XX×0.0211)+4.9474
2. 중증상병 해당 환자 구성비(30%)</td></tr>
</table>

평가항목	등급 구간 및 배점 (* 배점은 소수점 2자리까지 산출)
	1) 중증상병 해당 환자 구성비* 11% 이상 10점 2) 중증상병 해당 환자 구성비* 3% 미만 6점 3) 중증상병 해당 환자 구성비* 3% 이상 11% 미만인 경우 (중증상병 해당 환자 구성비* XX.XX×0.5)+4.5 * 평가 기준시점 : 2026년 11월 30일
최종치료 제공률	1) 최종치료 제공률* 92% 이상 10점 2) 최종치료 제공률* 65% 미만 6점 3) 최종치료 제공률* 65% 이상 92% 미만인 경우 (최종치료 제공률* XX.XX×0.1481)-3.6296 * 평가 기준시점 : 2026년 11월 30일

3. 평가방법

1) 지정기준별 배점에 가중치를 곱하여 더한 점수(총점)를 구한다.

2) 1)에서 구한 점수에 다음 각 목에 따라 가점 또는 감점을 적용할 수 있다.

가) 연간 5개 이상의 간호대학을 대상으로 간호 실습교육을 위한 전문적 간호기술 역량을 갖출 경우 가점 2점(평가 기준시점 : 2026년 6월 30일)

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75호, 2024.12.27.) 별표4에 의한 희귀질환비율은 1.7%이상인 경우 1점, 0.4% 이하인 경우 0.6점, 0.4% 초과 1.7%미만인 경우는 산출식[(XX.XX×0.3077)+0.4769]에 따라 가점 적용 (배점은 소수점 2자리까지 산출, 평가 기간 : 2024년 1월 1일 ~ 2026년 6월 30일)

다) 주요 공공의료 유관센터를 운영한 경우 가점 최대 3점(평가 기준시점 : 2026년 11월 30일)

(1)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응급의료기관 평가의 '지역 내 소아 응급환자 분담률', '중증상병 해당 환자 분담률과 구성비', '최종치료 제공률' 지표 결과 등급 배점을 합산하여 백분위 순위에서 상위 50%는 1.5점, 중위 40%는 1점, 하위 10%는 0.5점. 단, 신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기존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표결과를 권역응급의료센터 등급 구분 방식에 따라 배점

(2) 권역외상센터는 0.5점

(3)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권역책임의료기관, 중증·권역모자의료센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센터 당 0.25점

라) 재지정의 경우 제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청한 사전협의에 응하지 않거나 사전협의결과와 달리 증설한 허가병상에 대해 원상회복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감점 5점

3) 총점이 높은 병원을 우수한 병원으로 한다.

4) 총점이 동점이 나온 경우 환자구성상태, 의료인 수, 교육기능, 의료서비스 수준 순으로 높은 배점을 받은 의료기관을 우수한 병원으로 한다.

5) 위와 같은 방법으로 우수한 병원을 구분할 수 없을 때에는 환자구성상태 중 전문진료질병군 입원환자비율이 높은 의료기관을 우수한 병원으로 한다.